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2. 24.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2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4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협의회 구성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구성(안 제3조)
    - 구성 인원수 조정
      - 50인 이내 → 50인 내외
  - 간사(안 제4조)
    - 간사의 인원수 조정 및 임무부여
      - 간사 인원수 : 1인 → 2인
      - 임무부여 : 당연직 간사 - 행정운영 전체  
위촉직 간사 - 위촉직 위원 상호협조관계 총괄
- 다. 참고사항
  -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2002.11.15~12.4)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본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제3조(구성)통합방위협의회위원의 구성원수 “5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개정하고 (안)제4조(간사)의 종전 1명을 2명으로 보완하여 당연직 간사 1명(행정사무총괄) 위촉직 간사 1명(위촉직 위원 상호간 협조관계 총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통합방위법 제5조, 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 제정된 조례로써 이는 국가통합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로써 필수 구성협의회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에 오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입 구성원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하고,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2명”으로 하여 당연직 간사(행정업무총괄)와 위촉직 간사(위원 상호간 협력총괄)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본 조례 제3조(구성) 제1항의 협의회 위원수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를 조정하여 보다 폭넓게 참여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3조(구성) 1항의 내용중 “고문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구성) 1항의 “고문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호
----------	-----------

제안년월일 : 2002. 2. 24  
제안자 : 김성렬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 제3조(구성)1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를 조정하여 협의회 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구성) 1항의 내용중 “고문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함.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고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 50인 내외 .....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u>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u>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
------------	----

제출년월일 : 2003. 2. 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협의회 구성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성(안 제3조)
  - 구성 인원수 조정
    - 50인 이내 → 50인 내외
- 간사(안 제4조)
  - 간사의 인원수 조정 및 임무부여
    - 간사 인원수 : 1인 → 2인
    - 임무부여 : 당연직 간사 - 행정사무 총괄  
위촉직 간사 - 위촉직 위원 상호협조관계 총괄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별도 필요 없음
- 입법예고(2002.11.15~12.4)결과 : 의견제출 없음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5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를 “행정관리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고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50인 내외 .....	
제4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제4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신설)		②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2. 24.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2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6550호)
  - 지방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필요
- 나. 주요골자
  - 조례 제5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9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함.